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세무2과-25423
등록일자	2015.7.23.
결재일자	2015.7.24.
공개구분	부분공개(7)

주무관	지방소득세2팀장	세무2과장	기획경제국장		
조삼숙	윤미라	김광수	전결 07/24 문경수		
협조자					



-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-

## 지방소득세 일괄 환급 계획

### 【추진 목표】

국세환급과 연동한 지방소득세의 신속한 환급처리로 납세자 권익보호

#### ■ 관련근거

-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34 【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】  
- 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대량 환급발생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환급

#### ■ 환급현황

- 환급액(1차) : 15,086건/928백만원
- 환급이자 기산일 : 2015.7.2.
- 환급결의일 : 2015.7.23.
- 환급금 충당 : 환급자중 체납액이 있을시 우선 충당후 차액 환급

2015. 7. 23.

강 남 구  
(세 무 2 과)

#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<b>관련 규정 및 근거</b>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 ▶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 34 【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】
<b>추진 경위</b>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▶ 신속한 환급세액 결정으로 환급이자 최소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
<b>예산 사항</b>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 ▶ 해당사항 없음
<b>수혜자 및 범위</b>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 ▶ 수혜자 : 2014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자
<b>분야 별 검토사항</b> [계속 : ○] [신규 : ]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 ○ 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 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) ⑤ 시장조사 ----- ( 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 ○ 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 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)
<b>타 기관 사 례</b>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 ▶ 25개 구청 공통사항
<b>전문가 자 문</b>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 ▶ 해당사항 없음

-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-

# 지방소득세 일괄 환급 계획

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국세 환급으로 지방소득세도 대량 환급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신속히 연계 처리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 및 환급이자 최소화하고, 체납이 있을 시 우선 충당 처리하여 효율적으로 체납해소에 기여하고자 함

## I 관련 근거

-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34 【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】
  -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급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·군에서 충당하거나 환급
- 2015. 7. 23. ☞ 서울시 『2015년 확정신고분 일괄환급 자료제공』

## II 환급 현황

환급액(1차) : 15,086건 / 928백만원

구분\년도	2015	2014	2013	2012
건수	15,086	24,907	22,942	21,357
금액	928	1,783	1,664	1,529

※ 2014.2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조건표 조정으로 원천징수액 감소하여 환급액 축소

## III 처리 기준

- 환급이자 기산일 : 2015. 7. 2.
  -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 제5호(지방세환급가산금)
    -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

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다음날(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일 경우 해당 법정신고 기일)부터 30일 지난 때.

※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매년 5.31.까지 확정신고

환급결의일 : 2015. 7. 23.(환급이자 일수 22일)

환급금 총당

-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34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·군에서 총당

#### IV 추진 일정

처리현황별 일정

- 7.23 : 서울시로부터 세무종합시스템에 구축된 자료 수령
- 7.24 : 주소지 일괄환급 결정 및 통보
- 7.24~30 : 체납확인 압류 및 총당처리
- 7.30 : 환급자료 우리은행 자료 송부
- 7.30~8.6 : 오류자료 수기 처리

#### V 행정 사항

- 2014귀속 지방소득세 주소지 일괄환급 결정 - 세무2과
- 주소지 환급자 중 체납자 압류 및 총당처리 - 세무관리과
- 대량이체(계좌입금) 처리 - 우리은행
- 환급 민원문의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 - 세무2과, 세무관리과